

# 김포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526 호
------------	---------

제출년월일 : 2004. 7 . . .

제 출 자 : 김 포 시 장

## □ 제안이유

- 학교급식법 제3조, 제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 제15조 규정에 의거 김포시 지역내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 도모
-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하고자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함.

## □ 주요골자

- 가.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김포시 지역내 초·중·고등 학교로함. (안 제4조)
- 나.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로 또는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함. (안 제5조)
- 다. 시장은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7조)
- 라. 급식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구입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안 제8조)

## □ 제정조례안 : 별첨

## □ 관계법령말씀서 : 별첨

- 학교급식법 제3조, 제6조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5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점진적 예산증액 계획 있음
- 사전예고결과 : 2004. 6. 1~6.25 입법예고, 의견 1건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주민청원조례안 및 우리시조례안과의 조문비교표
  - 전국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현황

## 김포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김포시 지역내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이하 우수농산물이라 한다.)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농산물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 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이상의 축산물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 품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학교 중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시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중 일부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학교 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안전하고 신선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김포시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로서 우수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고자하는 학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직영급식 및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우선 지원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시장과 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초·중학교는 김포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 ④ 학교급식 경비분담, 급식체계, 지원체계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김포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산물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15명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자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시장, 교육관련 국·과장, 농정과장
2. 김포교육청 관련과장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인
4. 학부모단체 추천 초·중·고 각 1인
5. 농민단체 추천 1인
6. 교원단체대표 1인
7. 김포시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에서 추천한 2인
8. 관련전문가 1인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김포시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의 전반적인 학교급식 실시현황 파악
2. 학교급식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와 지출정산 내역의 심의
3. 각급 학교 급식소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교육
4.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간사및서기)** 심의위원회 간사는 교육관련 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산물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사용내역을 매학기별로 김포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단,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와 지원금이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 부당사례 적발시 시정요구, 지원중단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소		자치지원과
임 안 자	실·과·소장	자치지원과장
	직위·성명	이 돈 수
	담 당	교육지원담당
	직위·성명	박 기 원
	담 당 자	윤 은 주
성명·전화		(행정 2577)

## 관 계 법령 발 췌 서

### 【학교급식법】

제3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골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급식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1.1.29>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4.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전문개정 1999.8.31]

제6조 (학교급식의 운영원칙 및 관리기준) ①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학교급식의 내용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급식관리에 있어서는 위생과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학교급식의 영양 및 관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 (급식경비부담)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중 다음 각호의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협의하여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는 제2호의 경비에 한한다.<개정 1994.6.17, 1995.4.6, 1997.4.29>

1.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유지비
2. 연료비 및 학교급식 종사자의 인건비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4.29>

1. 식품비

2. 학교급식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제1항 각호의 경비를 제외한 경비로서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경비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2.3.20, 1984.2.25, 1990.2.12, 1990.12.22, 1991.2.1, 1994.6.17, 1996.2.22, 1997.4.29>

1.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이하 "도서벽지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외의 지역의 초등학교로서 7할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도서벽지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에 관한 경비중 제2항 각호의 경비

2. 농어촌지역(시·군의 읍·면지역중 도서벽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외의 지역의 초등학교로서 7할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농어촌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에 관한 경비 중 식품비의 3분의 1과 제2항제2호의 경비

3. 교육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 중 예산상 가능한 경비

④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급식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7.4.29>

1. 도서벽지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외의 지역의 초등학교로서 7할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도서벽지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비중 제7조제2항 각호의 경비

2. 농어촌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그외의 지역의 초등학교로서 7할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농어촌지역의 학부모와 유사한 생활여건에 처하여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초등학교의 급식비중 제7조제2항 각호의 경비의 3분의 1

3. 교육감이 위탁급식으로 제공된 식품에 대한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 중 예산상 가능한 경비

⑤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급식학교"라 함은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로 지정한 학교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개정 1997.5.13>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1999.2.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7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3조 (건전재정의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김포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6조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조의 2에 따라 김포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국산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여 국민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 “국내산 농산물”이라 함은 김포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 “우리농산물 지정판매업자”라 함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재료를 공급하는 판매업자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 결정하여 시장이 인증한 자를 말한다.
-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김포시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단, 직영급식 실시 대상자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4조(지원 방법)

- 시장 및 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김포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김포지역 내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며, 김포지역 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생산량이 모자라는 재료는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국산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한다.
- 시장은 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체계,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 시장은 관할 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한다.

#### 제5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국산농산물 사용 시 소요되는 충경비와 지원받고자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급식소위원회의 공급자선정 및 검수계획서 제출
7.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1.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방법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2.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 ① 부시장, 농정과장, 문화공보담당관
  - ② 교육청 해당 담당자 1인
  - ③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인
  - ④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김포시운동본부에서 추천한 3인  
(학부모대표 1인, 농민단체대표 1인, 교사단체대표 1인)
  - ⑤ 김포시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1인
3. 지원심의위원회는 학교급식의 지원대상 선정, 우리농산물 지정판매업자의 인증, 지원 금액 등을 심의, 결정한다.
4. 지원심의위원회는 각급 학교 급식소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우리농산물 지정 판매업자의 의무)

1. 시장은 안전한 지역 농산물 및 국산 농산물을 판매하는 지정판매업자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농산물 구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2. 우리농산물 지정판매업자는 국산농산물을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해야 하고 매년 판매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필요시 우리농산물 지정업자의 판매내역에 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시장은 우리농산물 지정업자가 2항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3항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판매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는 지원대상자는 지원금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국 산농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관할 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지도, 감독)

1. 시장은 필요시 지원대상 학교의 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수시로 조사할 수 있고 이의 부당 사례를 적발 시 지원 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김포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문대비표)

청원조례(안)	제정조례(안)	검토내용
<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6조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3조 및 제3조의 2에 따라 김포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국산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관행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이하 우수농산물이라 한다.)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김포시 지역내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관행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이하 우수농산물이라 한다.)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WTO/GATT협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통상마찰이 우려됨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로 표기 - 국산농산물만을 급식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때는 급식운영에 차질초래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35항(지원할 수 있는 범위 :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에 밖에남)
<b>제2조(정의)</b> 1."학교급식"이라 함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국내산 농산물"이라 함은 김포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3."우리농산물 지정판매업자"라 함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재료를 공급하는 판매업자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 결정하여 시장이 인증한자를 말한다.  4."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b>제2조(정의)</b>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농산물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이상의 축산물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 학교급식 대상자의 범위를 재학중인 학생으로 명확화함.  - 제1조와 같으며 우수농산물의 기준을 세부화함.
<b>&lt;추가&gt;</b>	<b>&lt;미적용&gt;</b>  3.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학교중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 식재료 구매에 관한 사항은 급식을 실시하는 단위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우리농산물만을 지정판매업자로 지정하는 사례는 없음.  - 용어정의에 '식재료'를 추가 하였음.

청원조례(안)	제정 조례(안)	검토 내용
〈신설〉	<p><b>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업무)</b></p> <p>① 시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중 일부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학교 급식에 우수농산물이 안전하고 신선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와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p>	-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동조례의 취지를 명백히 한.
<b>제3조(지원대상)</b> 지원대상은 김포시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단, 직영급식 실시 대상자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p><b>제4조(지원대상)</b></p> <p>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김포시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로서 우수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고자하는 학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직영급식 및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우선 지원한다.</p>	- 지원대상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며 직영급식학교를 우선 지원함으로써 직영급식체계 전환 유도
<b>제4조(지원방법)</b> 1. 시장 및 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김포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김포지역 내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며, 김포지역 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생산량이 모자라는 계료는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국산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한다. 2.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체계,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3. 시장은 관할 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한다.	<p><b>제5조(지원방법)</b></p> <p>① 시장과 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의 일부를 현물로 지원하거나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p> <p>③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초·중학교는 김포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한다.</p> <p>④ 학교급식 경비분담, 급식체계, 지원체계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p>	- 제1조와 같은. - 식재료비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현물 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육청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경로를 명확히 한.
〈신설〉		- 학교급식의 경비분담, 급식체계, 지원체계의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첨원조례(안)	제정 조례(안)	검토내용
<p><b>제5조(지원신청)</b></p> <p>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교육청을 통하여 <u>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u>국산농산물</u>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u>급식소위원회의 공급자선정 및 검수계획서 제출</u> 7.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u>〈신설〉</u></p> <p><u>〈신설〉</u></p>	<p><b>제6조(지원신청)</b></p> <p>①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김포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p> <p>1. 지원대상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u>우수 농산물</u>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u>〈삭제〉</u></p> <p>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p> <p>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여야 한다.</p> <p>③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지원신청에 대한 경로를 명확히함,</li> </ul> <p>- 제1조와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청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학교 및 교육청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시장임</li> </ul> <p>-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p> <p>- 지원신청에 따른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p>
<p><b>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b></p> <p>1.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방법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 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p> <p>2. 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p> <p>① 부시장, 농정과장, 문화공보담당관 ② 교육청 해당 담당자 1인 ③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인 ④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김포시 운동본부에서 추천한 3인 (학부모대표 1인, 농민단체대표 1인, 교사 단체대표 1인)</p> <p>⑤ 김포시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1인 <u>〈신설〉</u></p>	<p><b>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b></p> <p>①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등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심의위원회 위원은 15명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부시장, 교육관련 국·과장, 농정과장 2. 김포교육청 관련과장 3.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인 4. 학부모단체 추천 초·중·고 각 1인 5. 농민단체 추천 1인 6. 교원단체대표 1인 7. 김포시학교급식조례제정 운동본부에서 추천한 2인 <u>〈삭제〉</u></p> <p>8. 관련전문가 1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의위원 구성에 따른 탄력적 운영</li> </ul> <p>- 영양사협회는 도단위 단체임(김포시에 없음)</p>

청원조례(안)	제정 조례(안)	검토 내용	
〈신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김포시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의 전반적인 학교급식 실시현황 파악 2. 학교급식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와 지출정산 내역의 심의 3. 각급 학교 급식소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교육 4. 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임원진 선정의 건을 명확히함. - 위원들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위원회 정체성을 확고히함.	
〈신설〉	3. 지원심의위원회는 학교급식의 지원대상 선정, 우리농산물 지정판매업자의 인증, 지원금액 등을 심의 결정한다. 4. 지원심의위원회는 각급 학교 급식소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심의위원회 업무를 명확화함 - 제1조, 제7조와 관련하여 지정판매업자 인증사항을 삭제함.	
제7조(우리농산물 지정판매업자의 의무)	〈삭제〉	- 교육청의견 및 타시군 사례를 반영한 것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단위학교로 하여금 선택에 따른 다양성 확보 - 지정판매업자의 독과점 방지 및 올바른 시장가격 형성에 기여	
〈신설〉	1. 시장은 안전한 지역 농산물 및 국산 농산물을 판매하는 지정판매업자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농산물 구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2. 우리농산물 지정판매업자는 국산농산물을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해야 하고 매년 판매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필요시 우리농산물 지정업자의 판매내역에 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시장은 우리농산물 지정업자가 2항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3항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판매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심의위원회 간사는 교육관련 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 심의위원회 간사·서기를 교육관련 행정실무자로 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첨원조례(안)	제정 조례(안)	검토 내용
<p><b>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b></p> <p>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금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u>국산농산물</u> 구입에 사용하여야하고 <u>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관할 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u>&lt;신설&gt;</u></p>	<p><b>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b></p> <p>①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u>우수 농산물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조와 같음</li> </ul>
<p><b>제9조(지도·감독)</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장은 필요시 지원대상 학교의 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수시로 조사할 수 있고 이의 부당사례를 적발 시 지원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li> <li>2. 지원대상자가 제9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li> </ol>	<p><b>제10조(지도·감독)</b></p> <p>①시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 부당사례 적발시 시정요구, 지원중단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②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내역 정산보고를 년 1회에서 2회(매학기)로 하여 투명한 예산집행 정착</li> <li>- 정산보고 경로를 명확화한</li> </ul>
<p><b>제10조(시행규칙)</b></p> <p>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b>부칙</b>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p>	<p><b>제11조(시행규칙)</b></p> <p>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b>부칙</b>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p>	

# 전국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조례 제정 현황

일련 번호	기관명	조례 및 규칙명	식재료의 정의	지정 판매업자	지원대상 범주
1	경기 김포시	김포시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조례	우수농산물	x	학교
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조례	우수농산물	x	학교, 유아원 보육시설
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조례	우수농산물	x	학교
4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조례	우수농산물	x	학교
5	경기 군포시	군포시학교급식시설지원에 관한조례	우수농산물	x	학교
6	경기 여주군	여주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	우수농산물	x	학교
7	전북 익산시	익산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	우수농산물	x	학교
9	전라남도	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 관한조례	우수농산물	x	학교 유아교육기관
10	전남 순천시	순천시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 관한조례	우수농산물	x	학교 유아교육기관
11	전남 나주시	나주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	우수농산물	x	학교
12	전남 화순군	화순군학교급식비지원조례	우수농산물	x	학교 유아교육기관
13	전남 함평군	함평군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 관한조례	우수농산물	x	학교 유아교육기관
14	경상북도	경상북도학교급식식재료사용및지원에 관한조례	우수농산물	x	학교 유아교육기관
15	경북 안동시	안동시학교급식비지원조례	우수농산물	x	학교 유아교육기관
16	경남 진주시	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	우수농산물	x	학교
17	제주 제주시	제주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조례	우수농수산물	x	학교
18	경기도	경기도학교급식지원에 관한조례	국내산 우수농수산물	x	학교
19	전라북도	전라북도학교급식지원에 관한조례	전라북도내 우수농수산물	o	학교



# ● 김포농업협동조합

415-030 / 김포시 북변동 301-2

/☎031-998-7931 /FAX:031-982-4085 /담당:양태성

문서번호 : 김포제 126호

시행일자 : 2004. 06. 25

수신 : 김포시청

경유 : 자치지원과

참조 : 자치지원과장

선결	과장		지시	
접수	일자	2004.6.25	결재	
	번호	2413	공람	
	처리과	자치지원과	과장	
	담당자	윤은주	담당	

## 제 목 : 김포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견서 제출

(김포시공고 제2004-328호)의거

금번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생산자 단체의 입장에서 환영하는 바이며 아래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1. 조례안 변경내용.

조례안	조례변경의견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 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산물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 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u>국내산 우수농산물과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u>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위 내용의 변경서를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김포농업협동조합



###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 사용사유\*

- ① 성장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급식은 학생 개인의 현재와 장래의 건강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② 관내 농산물을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할 경우 특정 품목의 과잉 생산시 수급 조절이 용이함과 관내 농민의 소득증대에 효과가 있습니다.
- ③ 현재의 낮은 급식 단가로 하급 농산물과 농약 성분이 많은 수입 농산물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을 현재 위협하고 있습니다.
- ④ 학교급식에 국내농축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어릴때부터 자연스럽게 관내 농축산물을 애용하여 우리의 식문화를 지키는 효과와 더불어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근간이 됩니다.
- ⑤ 관내 농산물 수급은 정부행정과 관내 농협관의 긴밀한 협조 체계로 소비촉진을 유발 할 수 있으며 지역 농업인 입장에 최선을 다하여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주체로 거듭날수 있는 방향을 제시 합니다.

# 김포시 학교급식 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526
----------	-----

제안년월일 : 2004년 7월 16일

제안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문수

## 1. 수정이유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와 우리 농·수·축산물 중심의 식습관 형성은 물론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쇠퇴해가는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 학교급식의 식재료 사용을 우선적으로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을 권장하고자 수정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 급식비 지원 신청에 있어 급식소위원회의 공급자 선정 및 검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규정 신설 (안 제6조)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있어 관련 전문가에 영양사를 포함하도록 하였음(안 제7조)
- 급식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9조)

## 김포시 학교급식 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포시학교급식비지원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를 삭제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이하 우수농산물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이하 국내산 우수농산물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국내산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농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 나.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 다. 축산법 및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 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 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 품
- 마.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 품
- 바.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 상표 관리 조례에 의한 경기도 지사인증 농특산물

안 제3조 제2항, 안 제4조, 안 제5조 제1항, 안 제6조 제1항 제4호, 안 제9조 제1항,

안 제10조 제1항 중 각각의 “우수농산물”을 “국내산 우수농산물”로 한다

안 제6조 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급식소 위원회의 공급자 선정 및 검수 계획서 제출

안 제7조 제1항 제8호 관련 전문가 다음에 “영양사 포함”을 삽입한다

안 제9조 제1항 중 “우수농산물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를 “국내산 우수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b>제1조(목적)</b> <p>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제6조와 같은법시 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김포시 지역내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이하 국내산 우수농산물이라 한다.)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b>제1조(목적)</b> <p>이 조례는 김포시 지역내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이하 국내산 우수농산물이라 한다.) ----- ----- -----</p>
<b>제2조(정의)</b> 1. (생략) 2.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농산물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이상의 축산물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3 ~ 4. (생략)	<b>제2조(정의)</b> 1. (제정안과 같음) 2. “국내산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바. 경기도농특산물통합상표관리조례에의한 경기도지사인증 농특산물 3 ~ 4. (제정안과 같음)
<b>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b> ① (생략) ② ----- <u>우수농산물</u> -----	<b>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b>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u>국내산 우수농산물</u> -----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지원대상) ----- ----- <u>우수농산물</u> -----	제4조(지원대상) ----- ----- <u>국내산 우수농산물</u> -----
제5조(지원방법) ① ----- ----- <u>우수농산물</u> ----- ② ~ ④ (생략)	제5조(지원방법) ① ----- ----- <u>국내산 우수농산물</u> ----- ② ~ ④ (제정안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① (생략) 1 ~ 3. (생략) 4. <u>우수농산물</u> ----- 5. (생략) 6. <u>(신설)</u> ② ~ ③ (생략)	제6조(지원신청) ① (제정안과 같음) 1 ~ 3. (제정안과 같음) 4. <u>국내산 우수농산물</u> ----- 5. (제정안과 같음) 6. <u>급식소위원회의 공급자선정 및 검수계획서 제출</u> 7.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 ③ (제정안과 같음)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생략) ② (생략) 1 ~ 7. (생략) 8. <u>관련전문가 1인</u> ③ ~ ⑤ (생략)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1 ~ 7. (제정안과 같음) 8. <u>관련전문가(영양사 포함) 1인</u> ③ ~ ⑤ (제정안과 같음)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 ----- <u>우수농산물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u> ② (생략)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 ----- <u>국내산 우수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u> ② (제정안과 같음)
제10조(지도 · 감독) ① ----- <u>우수농산물</u> ----- ----- ----- ② (생략)	제10조(지도 · 감독) ① ----- <u>국내산 우수농산물</u> ----- ----- ----- ② (제정안과 같음)